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40가구		
사업목적	주거취약계층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의 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611호, 2023.4.7.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정·환경 개선사업, <u>이사비·생필품지원 사업</u> , 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000	16,000	12,000	0	0	4,000	4,000	
국비	6,000	8,000	6,000			2,000	2,000	
도비	1,800	2,400	1,800			600	600	
시비	4,200	5,600	4,200			1,400	1,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400천원 지원 · 경정16,000,000원(40가구*400천원) - 기정12,000,000원(30가구*400천원) = 4,000,000원	= 4,000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확정된 가구에 대해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거주지로 이전 지원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12.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2025.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자 : 20가구
2024	· 지원대상자 : 32가구
2025	· 지원대상자 : 20가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7,000	7,334	-	59,666	
2024	12,000	12,000	-	-	
2025	12,000	7,586	-	4,41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전화	2416
-----	-----	------------	-----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4. 3. 1. ~ 2027.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청년 429명		
사업목적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60,000	1,031,000	734,000	0	0	297,000	371,000	
국비	330,000	515,500	367,000			148,500	185,500	
도비	99,000	154,650	110,100			44,550	55,650	
시비	231,000	360,850	256,900			103,950	129,8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7,00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임대료 월 최대 200천원까지 지원 · 경정 1,031,000,000원(429명*200천원*12개월) - 기정 734,000,000원(306명*200천원*12개월)	= 297,000	

□ 예산요구 사유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0천원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청년월세 지원기간 확대(12개월→24개월)됨에 따라 지원대상 증가, 2025.9월 이후 예산소진이 예상됨으로 예산 증액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2025.0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 2024.03.~2025.05. : 보장결정 및 통지
 - 2024.03.~2027.12. : 청년월세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자 : 207명(월평균 48,936천원)
2024	· 지원대상자 : 225명(월평균 61,548천원)
2025	· 지원대상자 : 403명(월평균 89,8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84,738	587,238	208,000	789,500	
2024	868,000	738,581	129,419	-	
2025	863,419	629,230	-	234,18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복지7급 위세아 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6 2417
-----	-----	------------	-----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수해가구 300여가구		
사업목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5조(주거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청년기본법	제20조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0,000	85,600	107,000	0	0	-21,400	15,600	
국비	35,000	42,800	53,500			-10,700	7,800	
도비	10,500	12,840	16,050			-3,210	2,340	
시비	24,500	29,960	37,450			-7,490	5,4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40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경정 85,600원(214가구*400,000만원) - 기정 107,000원(267가구*400,000원) =	-21,400	

□ 예산요구 사유

-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지원액(400천원)보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는 적어 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감액편성
- 도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시·군 예산조정(경기도 주택정책과-12083(2025.6.17.시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년 추진계획 시행 및 신청 개시
 - 2025. 04. : 사업지침 개정(지원한도 인상 최대 30만원 → 40만원)
 - 2025. 05. : 개정사항 홍보
 - 2025. 12. : 사업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접수 130건 (적합 103건 지원, 부적합 27건)
2024	· 접수 387건 (적합 317건 지원, 부적합 70건)
2025	· 접수 283건 (적합 216건 지원, 부적합 6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800	21,864	-	6,936	
2024	70,000	70,000	-	0	
2025	107,000	48,626	-	58,37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주택과	주거복지팀장 최정은	담당자	사회복지8급 정진희	전화	2417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건축과



농촌 빈집실태조사

사업기간	2025. 8.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농촌 지역	
사업규모	100호 빈집실태조사				
사업목적	김포시 내 빈집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8,000	0	0	0	8,000	8,000	
국비		4,000				4,000	4,000	
도비		0					0	
시비		4,000				4,000	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농촌 빈집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 업무대행 : 80,000원*100호	= 8,000	

□ 예산요구 사유

- 농촌지역 빈집 현황을 파악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민간활용 등을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
-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를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수집 및 분석하여 빈집 관련사업에 연계 활용

□ 예산증감 사유

-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사업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신청
 - 2025. 04. : 국고보조금 배분
 - 2025. 05. : 농촌 빈집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 2025. 09. : 농촌 빈집실태조사 업무대행 협약
 - 2025. 12. : 농촌 빈집실태조사 완료
 - 2026. 01. :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빈집정비사업 실시(빈집 10개소 철거)
2024	· 빈집정비사업 실시(빈집 4개소 철거)
2025	· 빈집정비사업 실시(5개소 철거 지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유정수	담당자	시설6급 조한욱	전화	2386
-----	-----	------------	-----	----------	----	------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업기간	2025. 7. ~ 2027. 12	사업위치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로 15(거물대2리 경로당)
사업규모	경로당 1개소(연면적 154.05㎡, 지상2층)		
사업목적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재실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은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86,390	0	0	0	186,390	186,390	
국비	0	130,470	0	0	0	130,470	130,470	
도비	0	16,776	0	0	0	16,776	16,776	
시비	0	39,144	0	0	0	39,144	39,144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6,39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401-01 시설비	. 설계비 : 18,050,000원 . 공사비 : 165,529,000원	= =	183,579
	401-02 감리비	. 감리비 : 2,811,000원	=	2,811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경로당) 1개소의 준공연도가 2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단열저하 및 결로·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열악
- 사업대상지의 에너지 절감률이 평균 33%로, 정주여건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사업진행이 필요하며, 도정 주요시책지표에 반영된 사업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상반기 공모신청으로 선정된 사업
 - 국비 70%, 지방비 30% [지방비 = 도비3:시비7 매칭]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그린리모델링 대상시설 현황조사 제출
- 2025. 04. : 본 사업 공모 신청
- 2025. 06. :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선정 발표 및 사업비(보조금) 교부 신청
- 2025. 09. : 국도비 보조금 교부
- 2025. 11. : 설계용역 발주
- 2026. 03. : 공사 발주 및 계약
- 2026. 10.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12월 : 2025년 그린리모델링 희망 건축물 제출(경로당 2개소, 도서관 1개소)
2025	· 4월 : 사업컨설팅 중간보고서 접수 및 공모사업 신청(경로당 2개소, 도서관 1개소) · 6월 : 공모사업 대상 선정(경로당 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사업규모	연면적 154.05㎡, 지상2층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86,390
부기명 (세부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오니산로 1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2팀장 백만석	담당자	시설7급 조은상	전화	5063
-----	-----	-------------	-----	----------	----	------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사업기간		2025. 1. ~ 12. (12개월)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사업목적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와 협약을 통해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 제7항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9,000	155,000	95,000	0	0	60,000	56,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9,000	155,000	95,000			60,000	56,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201-01 사무관리비	검토 위탁 수수료 경정: 사용승인(413,560x106개소)+정기점검(942,050원x118개소) 기정: 사용승인(363,680x132개소)+정기점검(810,240원x58개소)	= 60,000	

□ 예산요구 사유

- 건축물 관리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 및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 건 수 증가

※ '20.5.1 이전 사용승인 : 관리자가 최초 정기점검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대비 적절성검토 대행 기관(한국부동산원) 검토 수수료 인상 및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 건수 증가에 따른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업무대행 협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총 187건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76,061천원 준공(사용승인 122건: 44,209천원, 기존건축물 40건 31,852천원)
2024	. 총 179건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98,603천원 준공 (사용승인 118건: 46,555천원 , 기존건축물 61건: 52,048천원)
2025	. 총 133건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89,877천원 (사용승인 69건: 28,920천원 , 기존건축물 64건: 60,95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6,000	76,061	-	29,939	
2024	99,000	98,603	-	397	
2025	95,000	89,877	-	5,12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팀장 권완택	담당자	시설8급 정문현	전화	5355
-----	-----	---------------	-----	----------	----	------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8. 11. ~ 2025. 12. 14.	사업위치	양도로56번길 101 (풍무동 780)
사업규모	연면적 3,193.64㎡ (지하1층 지상3층,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헬스장 등)		
사업목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풍무동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체육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레)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700,000	7,740,000	5,650,000	0	0	2,090,000	5,040,000	
국비	-	0	-	-	-	-	0	
도비	-	0	-	-	-	-	0	
시비	2,700,000	7,740,000	5,650,000	-	-	2,090,000	5,040,000	
기타	-	0	-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90,000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 공사비 : 1,555,000,000원	= 1,555,000	
	401-02 감리비	. 감리비 : 535,000,000원	= 535,000	

□ 예산요구 사유

- '제12차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사업(환경정책과)' 관련,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목적의 국비 439,100,000원 세입예산(2025. 1. 22. 교부) 및 시비 매칭금액 146,400,000원 반영
- 2025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해, 미편성된 잔여 사업비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차질 없는 공사 준공을 위하여 사업비 미편성액 예산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원안가결	-	-	-
일자	2024.11 반영	2022.08.	-	-	-	-	2022.11.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06. ~ 2021. 03. : 건축 기획용역
- 2021. 08. ~ 2023. 0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11. : 공사착공
- 2025.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15,500,000	7,760,000	7,740,000	5,650,000	0	0	2,090,000	0
공 정 별	설계비	450,916	450,916	0	-	-	-	-	-
	보상비	0	-	0	-	-	-	-	-
	공사비	13,254,084	6,749,084	6,505,000	4,950,000	-	-	1,555,000	-
	감리비	1,695,000	500,000	1,195,000	660,000	-	-	535,000	-
	부대비	100,000	60,000	40,000	40,000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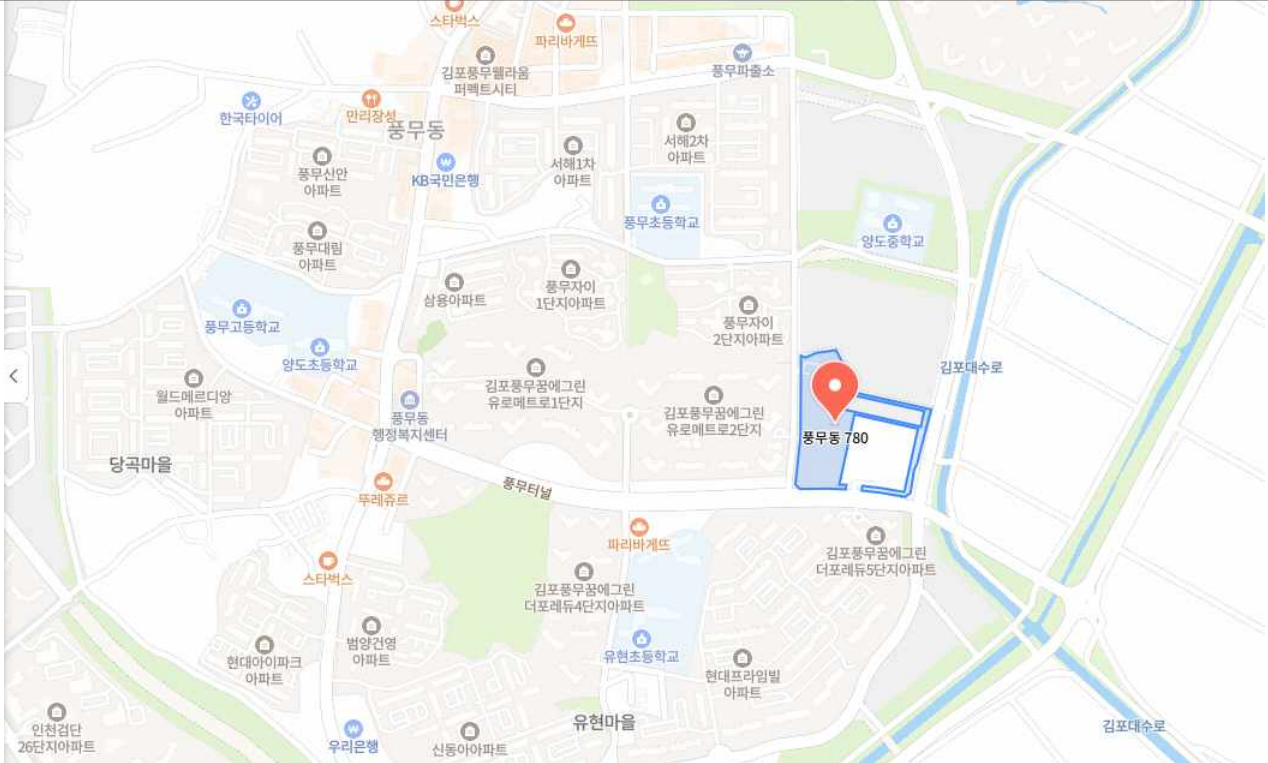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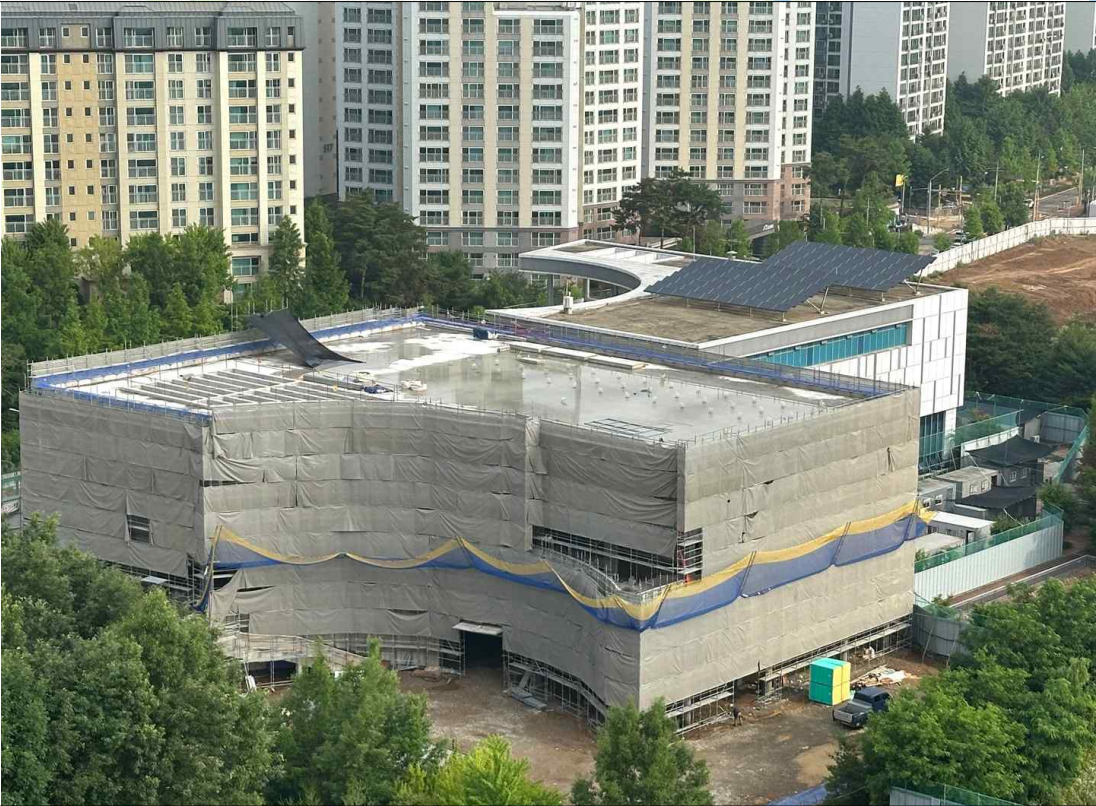
2023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2024	· 공사진행
2025	· 공사준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697,206	900,117	3,797,089	-	
2024	6,497,089	3,347,401	3,149,688	-	
2025	8,799,688	3,560,228	-	5,239,460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축과, 체육과	사업규모	연면적 3,193.64㎡ (지하1층/지상3층)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09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위치	풍무동 양도로56번길 101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축과	공공건축1팀장 박일용	담당자	시설7급 정희규	전화	5054
	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임풍석	담당자	시설8급 김영수	전화	219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고촌읍 태리, 대곶면 초원지리
사업규모	2개 지구 410필지 201,997천㎡(태리2지구 274필지 72,724㎡, 초원지구 136필지 129,273㎡)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해당조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4,620	38,000	46,700	0	0	-8,700	3,3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4,620	38,000	46,700	0	0	-8,700	3,3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700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지적재조사 지구 축소로 인한 지구계 필지 감소 (3지구→2지구) 경정(38,000,000원) - 기정(46,700,000원)	-8,70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은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개최 관련 비용,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사업 완료 후 지적도가 변경됨에 따른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수수료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임.

□ 예산증감 사유

- 지적재조사 3지구 약 800필지를 신청하였으나, 국비 감소 사유로 2개 지구 410필지 축소되어 지구계 필지 감소 사유가 발생함. [경기도 토지정보과-3423(2025. 2. 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검토(시·도 협의)
- 2024. 12 ~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 선정
- 2025. 1 : 현황측량 실시
- 2025. 2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2025. 3 ~ 2025. 7 : 경계 및 면적조정, 임시경계점 설치(토지소유자 입회)
- 2025. 8 ~ 2025. 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5. 10 ~ 2025. 11 : 경계결정통지서 통지, 이의신청접수
- 2025. 12 : 사업완료 공고, 기존 지적공부 폐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2025. 1 ~ 2025. 2 : 감정평가 실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 2025. 2 ~ : 조정금 지급·징수
- 2025. 11. : 조정금 공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태리지구』: 고촌읍 태리 554-1번지 일원 137필지 99,763.4㎡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18. 『후평2지구』: 하성면 후평리 1-2번지 일원 281필지 146,007.0㎡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대명지구』: 대곶면 대명리 488-1번지 일원 185필지 257,065.3㎡ / 사업기간 : 2022.10 ~ 2024. 3. 6.
2024	『원산지구』: 하성면 원산리 388-3번지 일원 210필지 158,01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고막2지구』: 월곶면 고막리 215번지 일원 222필지 116,225.4㎡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유현지구』: 양촌읍 유현리 111-4번지 일원 175필지 99,787.9㎡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마송지구』: 통진읍 마송리 146-4번지 일원 99필지 32,681.7㎡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2. 27.
2025	『태리2지구』: 고촌읍 태리 969-1번지 일원 274필지 72,724㎡ / 사업기간 : 2024. 10. ~ 2025. 12. 『초원지구』: 대곶면 초원지리 617번지 일원 136필지 129,273㎡ / 사업기간 : 2024. 10 ~ 2025. 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9,620	289,205	0	415	
2024	34,620	34,023	0	597	
2025	46,700	14,855	0	31,845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토지정보과	사업규모	2개 지구 410필지 201,997㎡	3회추경 요구액 (천원)	-8,700
부기명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사업위치	고촌읍 태리, 대곶면 초원지리		
위성사진 (태리2지구)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8급 천준규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

지적측량 기준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025년 지적재조사(태리2지구, 초원지구 지적기준점) 기준점 120점 설치		
사업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임규정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000	53,310	50,000	0	0	3,310	3,3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0	53,310	50,000	0	0	3,310	3,3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10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401-01 시설비	· 지적기준점(도근점) 현황조사 : 경정(11,000원*710점)-기정(10,000원*450점)	= 3,310	

□ 예산요구 사유

-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여야 함.

□ 예산증감 사유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단가 상승(기준 1만원 → 현재 1만1천원)
- 기존 지적재조사 완료지역(월곶, 하성 등) 기준점 망실 여부 현황조사 260점 추가
※ 道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실시 요청[경기도 토지정보과-5413(2025. 2. 2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 지적기준점 설치 의회 및 현황조사 위탁 의뢰
 - 2025. 3. 지적재조사 지구(태리2지구, 초원지구) 수수료 지급 완료
 - 2025. 5. 지적기준점 설치 및 현황조사 수수료 지급
 - 2025. 8.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추가 실시
 - 2025. 10.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추가분 수수료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지적기준점 1,522점(지적삼각보조점 208점, 지적도근점 1,314점) 현황조사 · 지적기준점 78점 설치 · 2023 지적재조사(태리지구, 후평2지구, 대명지구) 기준점 192점 설치
2024	· 지적기준점 1,008점(지적삼각점 8점, 지적도근점 1,000점) 현황조사 · 지적기준점 323점 설치 · 2024 지적재조사(원산지구, 고막2지구, 유현지구, 마송지구) 기준점 196점 설치
2025	· 지적기준점 1,420점(지적도근점 1,420점) 현황조사 · 지적기준점 200점 설치 · 2025년 지적재조사(태리2지구, 초원지구 지적기준점) 기준점 120점 설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454	47,449	0	5	
2024	50,000	49,701	0	299	
2025	50,000	49,957	0	4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신영균	담당자	시설7급 김 석 시설8급 전준규 시설8급 김민영	전화	2130 2129 2158
-----	-------	-------------	-----	----------------------------------	----	----------------------